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학생계좌에서 초과 금액을 공동

관리계좌로 송금한 경우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 불인정, 연구원의 처분행위, 사기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노599 판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학생연구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그들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인건비에 대한 처분권한은 일단 학생연구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들이 자신 소유의 통장에 입금된 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여 연구실의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하거나 공동관리 계좌를 관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는 독립된 학생연구원들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처분을 피해자의 처분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와 같은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노599 판결

행정소송, 이의신청, 소청심사,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